

## 부산항 집단계류지 안전관리 수칙 고시

부산항 집단계류지 안전사고 예방 및 항만질서 확립을 위하여 「부산항 집단계류지 안전관리 수칙」을 고시합니다.

2026. 6. 10.

부산지방해양수산청장

## 부산항 집단계류지 안전관리 수칙

### 1. 평상시

가. 집단계류지를 사용하려는 선박은 반드시 선종에 맞는 집단계류지에 계류하여야 한다.

\* 예인선은 대교동호안, 부산 600톤미만은 봉래동물양장, 감천항 4부두 5번 선석, 부산 600톤 이상은 동삼·청학안벽, 감천항 4부두 5번 선석, 급유관련 선박은 4·5물양장에 계류

나. 집단계류지를 사용하려는 선박은 반드시 부산항만공사에 항만시설

사용신청 후 승낙을 받고, 반드시 초소관리자의 지시에 따라 계류하여야 한다.

- 다. 집단계류지를 사용하려는 선박은 반드시 선교 또는 갑판실 상단 등 눈에 보이는 곳에 선박명, 호출부호(선박번호), 선주 및 선박관리자 연락처(3명이상)를 게재하여 비상시 긴급연락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.
- 라. 집단계류지를 사용하는 선박은 타 선박에 피해를 주지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닻(앵커)을 투묘하여 계류색(훗줄)의 장력을 감소하여야 한다.
- 마. 집단계류지 내 계류선박은 통항하는 선박의 항로를 방해하지 않도록 항로를 침범하여서는 아니된다.
- 바. 집단계류지 내 계류선박은 부산대교 또는 영도대교와 충돌하지 않도록 적정거리를 유지하고 계류하여야 한다.
- 사. 집단계류지로 입·출항 하는 선박은 계류시 반드시 초소관리자 및 인근 계류선박에게 통보하여 계류색(훗줄)을 안전하게 보장하여야 한다.

## 2. 기상악화시

- 가. 선박관리자(선장 및 항해당직사관)는 기상정보를 주시하면서, 기상이 악화 전에 전 선원이 대비할 수 있도록 귀선 조치하여야 한다.
- 나. 선박관리자(선장 및 항해당직사관)는 계류선박의 상황을 수시로 확인하고 운항이 가능한 상태를 유지하고, 닻 끌림(주묘) 사고를 방지하여야 한다.
- 다. 선박관리자(선장 및 항해당직사관)는 계류선박의 안전을 자체적으로 유지하기가 힘든 경우 즉시 부산항해양교통관제센터(VTS)와 해양경찰서에 연락하고, 예인선의 조력을 받아 피항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.
- 라. 기상악화시 집단계류지(봉래동물양장, 대교동호안, 4·5물양장, 동삼·청학 안벽,

감천항 4부두 5번 선석)에 계류한 선박은 선박대피협의회의 결과에 따라야 한다.

\* 선박에 대한 안전조치(계류색·훅줄 강화) 및 안전한 곳으로 피항 등

\*\* 북항 내 소형선의 피항장소는 5물양장(관공선부두) 전면해상, 대교동 호안, 동천 하구 해역, 부산의 피항장소는 7부두 전면해상 및 봉래동물양장

마. 기상악화시 4·5물양장에 계류하는 선박(급유선 등)은 풍랑주의보 이상의 기상특보 발효시 급유를 하여서는 아니되며, 급유작업 시 기상상황을 수시로 확인하고, 반드시 오염물질 확산방지 및 유입피해에 대비하여 작업을 진행하여야 하고, 해양오염이 예상될 경우 즉시 중단하여야 한다.

바. 기상악화시 동삼·청학 안벽에 계류한 선박은 선박대피협의회 결과 피항 명령이 있을 경우 반드시 안전한 곳(피항장소)으로 피항하여야 한다.

\* 부산항만공사는 동삼·청학 안벽 계류선박에 대해서 피항 명령 전 항만시설 사용 승낙 취소하고 피항을 요청(미피항 시 항만시설 무단사용 수사의뢰 및 추후 항만시설 사용제한)

사. 기상특보 해제에 따라 피항사유가 소멸된 경우 봉래동물양장 등 피항 장소로 피항 온 선박은 반드시 계류하던 원위치로 선박을 이동하여 항만 운영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.